

#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br>번호 | 8-269 |
|----------|-------|

제출년월일 : 2019. 11. .

제출자 : 안산시장

## □ 제안이유

- 「장애인복지법」의 개편사항에 부합하도록 백운공원 썰매장 입장료 감면 규정 개정.
- 노적봉공원, 호수공원 야외 결혼식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실제 이용실적이 없으며 조례에 규정된 물품의 미비, 예식 후 식사 관련 문제 등 공원 관리의 어려움 감안하여 해당 규정 삭제.
- 공원 내 공원시설 사용료 규정과 동일하게 사용료 규정도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준용하도록 개정하여 일관적인 행정 도모.
- 공공요금 미반환규정으로 인한 위법 · 소극행정을 예방하고 적극행정을 통한 주민권익 보호.

## □ 주요내용

- 백운공원 썰매장 감면규정 비고 4.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동반 1인 포함)으로 개정. (안 제11조 별표 2)
- 노적봉공원 · 호수공원 야외 결혼식장 사용료 규정 삭제. (안 제11조 별표 2)
- 사용료 반환 규정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준용하도록 개정. (안 제15조의3)
- 위탁 및 허가 수수료 미반환 규정 삭제. (안 제21조제2항)

## □ 개정조례안 : 붙임1

## □ 신 · 구조문대비표 : 붙임2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3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수반사항 : 붙임4
- 사전예고(결과) : 의견없음
  - 입법예고 : 2019. 9. 4. ~ 2019. 9. 24. (20일간)
- 기타 참고사항
  - 현행조례 : 붙임5
  - 방침결정문 : 붙임6

< 불임 1 >

##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3 및 제2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의3(사용료의 반환) 도시공원 내 체육시설 사용료 반환은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1조를 준용한다.

제21조(수수료 등) 법 및 이 조례에 의거하여 위탁 및 협약 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별표 5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소관 실·과      |                | 공원과              |
|-------------|----------------|------------------|
| 임<br>안<br>자 | 실·과장<br>직위·성명  | 공원과장<br>이상관      |
|             | 담당·팀장<br>직위·성명 | 공원행정팀장<br>정진우    |
|             | 담당자<br>성명·전화   | 임성현<br>(행정 2415) |

[별표 2]

공원 및 공원시설 사용료(제11조 관련)

3. 기타사용료

| 공원별                          | 종 별  | 사용기준  | 금 액  | 비 고          |
|------------------------------|--|---|--|--------------|
| 공 통                          | 사진<br>촬영   | 1인 1년당  | 100,000                                    | 상시 영리행위에 한함  |
|                              | 영화촬영   | 주간 1회<br>야간 1회  | 50,000<br>100,000                          |              |
|                              | 녹 화  | 1시간<br>초과시간<br>당  | 10,000<br>5,000                            | 영리목적 촬영에 한함. |
| 유 희 시설,<br>운 동 시설,<br>기 타 시설 | - 위탁관리자(법 제4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하는 자를 제외한다.)가 공원시설의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시행전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br>- 시장은 위탁관리자가 신고한 사용료가 부당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  |              |
|                              |  |   |  |              |
| 백 운<br>공 원                   | 셀 매 장  | 개인  | 어 른 7,000원, 청소년 · 군인 5,000원,<br>어린이 4,000원 |              |
|                              |  | 단체<br>(평일에<br>한함)   | 어 른 3,500원, 청소년 · 군인 2,500원,<br>어린이 2,000원 |              |
|                              | 비 고  | <p>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셀매장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 : 50퍼센트</li> <li>「한부모기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기족 : 50퍼센트</li> <li>「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 50퍼센트</li> <li>「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동반 1인 포함) : 50퍼센트</li> <li>「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50퍼센트</li> <li>단체할인(평일 단체로 사전 예약한 500명까지만 적용가능) : 50퍼센트</li> <li>3세 이하의 영유아 및 65세 이상인 사람 : 100퍼센트</li> <li>「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 100퍼센트</li> <li>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li> </ol> |  |              |

< 불임 2 >

## 신 · 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15조의3(사용료의 반환) ① 사용료 등<br/> <u>을 이미 납부한 사람이 불가피한 사정</u><br/> <u>으로 사용허가 취소신고를 하는 경우</u><br/> <u>시장은 사용취소를 신고한 시기에 따라</u><br/> <u>다음 각호와 같이 사용료를 반환 하여</u><br/> <u>야 한다.</u></p> <p>1. 사용일 전일까지 : 사용료의 6할<br/> 2. 사용일 10일 전까지 : 전액</p> <p>② 사용료반환은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br/> 이 신청하여야 한다.</p> <p>③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br/> 불가능하게 되어 경기 또는 행사를 개<br/> 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br/> 전액 반환한다.</p> | <p>제15조의3(사용료의 반환) 도시공원 내<br/> 체육시설 사용료의 반환은 「안산시 체<br/> 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1조를 준용<br/> 한다.</p>       |
| <p>제21조(수수료 등) ① 법 및 이 조례에 의<br/> 하여 위탁 및 허가등을 받고자 하는자<br/> 는 신청서에 별표5에 따른 수수료를 납<br/> 부하여야 한다.</p> <p>② 이미 납부된 수수료는 이를 반환하<br/> 지 아니한다.</p>   | <p>제21조(수수료 등) 법 및 이 조례에 의하<br/> 여 위탁 및 허가 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br/> 신청서에 별표5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br/> 하여야 한다.</p> |

| 현 행                          |                  |  |   |                   | 개 정 안   |              |  |  |  |  |  |
|------------------------------|------------------|--|---|-------------------|---|--------------|--|--|--|--|--|
| <b>[별표2]</b>                 |                  |  |   |                   | <b>[별표2]</b>  |              |  |  |  |  |  |
| <u>공원 및 공원시설 사용료(제11조관련)</u> |                  |  |   |                   | <u>공원 및 공원시설 사용료(제11조관련)</u>  |              |  |  |  |  |  |
| <b>3.기타사용료</b>               |                  |  |   |                   | <b>3.기타사용료</b>  |              |  |  |  |  |  |
| 공<br>동                       | 유<br>화<br>장      | 종 별  | 사용기준  | 금 액               | 비 고   |              |  |  |  |  |  |
|                              |                  | 사진촬영   | 1인 1년당  | 100,000           | 상시 영리행위에 한함   |              |  |  |  |  |  |
|                              |                  | 영화촬영   | 주간 1회<br>야간 1회  | 50,000<br>100,000 | 영리목적 촬영에 한함.  |              |  |  |  |  |  |
|                              |                  | 녹 화  | 1시간<br>초과시 간당   | 10,000<br>5,000   |   |              |  |  |  |  |  |
|                              |                  | - 위탁관리자(법 제4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하는 자를 제외한다.)가 공원시설의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시행전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br>- 시장은 위탁관리자가 신고한 사용료가 부당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                   |   |              |  |  |  |  |  |
|                              | 백<br>운<br>공<br>원 | 개인   | 어 른 7,000원, 청소년·군인 5,000원,<br>어린이 4,000원  |                   |   |              |  |  |  |  |  |
|                              |                  | 단체<br>(평일에<br>한함)  | 어 른 3,500원, 청소년·군인 2,500원,<br>어린이 2,000원  |                   |   |              |  |  |  |  |  |
|                              |                  | 비고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썰매장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br>1.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 : 50퍼센트<br>2.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50퍼센트<br>3.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 50퍼센트<br>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u>돌록된 장애인(1급~5급, 동반 1인 포함)</u> : 50퍼센트<br>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50퍼센트<br>6. 단체할인(평일 단체로 사전 예약한 500명까지만 적용 가능) : 50퍼센트<br>7. 3세 이하의 영유아 및 65세 이상인 사람 : 100퍼센트<br>8. 「보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 100퍼센트<br>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   |              |  |  |  |  |  |
|                              |                  | 노<br>적<br>봉<br>공<br>원<br>호<br>수<br>공<br>원  | 야외<br>결혼식<br>장  | 1회                | - 기본물품 : 과라솔 및 테이블(40조), 의자(200개), 단상(2개), 강연대(1개), 사회대(1개), 몽글랜드(2개), 명품(1조), 방송장비(앰프, 스피커1식, 마이크 3개)<br>- 공원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물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동일금액 적용 | 200,000<br>원 |  |  |  |  |  |
|                              |                  |  |   |                   |   |              |  |  |  |  |  |
| 공<br>원<br>별                  | 유<br>화<br>장      | 종 별  | 사용기준  | 금 액               | 비 고   |              |  |  |  |  |  |
|                              |                  | 사진촬영   | 1인 1년당  | 100,000           | 상시 영리행위에 한함   |              |  |  |  |  |  |
|                              |                  | 영화촬영   | 주간 1회<br>야간 1회  | 50,000<br>100,000 | 영리목적 촬영에 한함.  |              |  |  |  |  |  |
|                              |                  | 녹 화  | 1시간<br>초과시 간당   | 10,000<br>5,000   |   |              |  |  |  |  |  |
|                              |                  | - 위탁관리자(법 제4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하는 자를 제외한다.)가 공원시설의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시행전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br>- 시장은 위탁관리자가 신고한 사용료가 부당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                   |   |              |  |  |  |  |  |
| 백<br>운<br>공<br>원             | 밸<br>메<br>장      | 개인   | 어 른 7,000원, 청소년·군인 5,000원,<br>어린이 4,000원  |                   |   |              |  |  |  |  |  |
|                              |                  | 단체<br>(평일에<br>한함)  | 어 른 3,500원, 청소년·군인 2,500원,<br>어린이 2,000원  |                   |   |              |  |  |  |  |  |
|                              |                  | 비고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썰매장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br>1.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 : 50퍼센트<br>2.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50퍼센트<br>3.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 50퍼센트<br>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u>장애인복지법(1급~5급, 동반 1인 포함)</u> : 50퍼센트<br>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50퍼센트<br>6. 「단체할인(평일 단체로 사전 예약한 500명까지만 적용 가능) : 50퍼센트<br>7. 3세 이하의 영유아 및 65세 이상인 사람 : 100퍼센트<br>8. 「보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 100퍼센트<br>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       |
|------------|-------|
| 의 안<br>번 호 | 8-269 |
|------------|-------|

제안년월일 : 2019년 12월 5일  
제 안 자 : 도시환경위원장

## □ 수정이유

- 노적봉공원, 호수공원 야외 결혼식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실제 이용 실적이 없고 관련 물품 미비, 예식 후 식사 관련 문제 등 공원 관리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관련 별표 규정을 삭제 개정 요구 하였으나, 노적봉공원과 호수공원이 결혼식 행사를 치르기 위한 우수한 조경 환경을 보유하고 있어 관련 규정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음으로 현행과 같이 존치하는 것으로 수정함.

## □ 주요골자

- 별표2 공원 및 공원시설 사용료의 3.기타사용료 중 노적봉공원, 호수공원 야외결혼식장란을 현행과 같이 수정함.(안 별표2)

##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별표2의 3. 기타사용료를 별지와 같이한다.

[별표 2]

## 공원 및 공원시설 사용료(제11조 관련)

## 3. 기타사용료

| 공원별                   | 종 별                    | 사용기준              | 금 액  | 비 고  |
|-----------------------|------------------------|-------------------|--|--|
| 공 통                   | 사진 촬영                  | 1인 1년당            | 100,000                                    | 상시 영리행위에 한함  |
|                       | 영화촬영                   | 주간 1회<br>야간 1회    | 50,000<br>100,000                          |  |
|                       | 녹 화                    | 1시간<br>초과시간당      | 10,000<br>5,000                            | 영리목적 촬영에 한함.   |
|                       | 유희시설,<br>운동시설,<br>기타시설 | -                 | -  | - 위탁관리자(법 제4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하는 자를 제외 한다.)가 공원시설의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시행전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br>- 시장은 위탁관리자가 신고한 사용료가 부당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 백운<br>공원              | 썰매장                    | 개인                | 어 른 7,000원, 청소년 · 군인 5,000원,<br>어린이 4,000원 |  |
|                       |                        | 단체<br>(평일에<br>한함) | 어 른 3,500원, 청소년 · 군인 2,500원,<br>어린이 2,000원 |  |
|                       |                        | 비 고               |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썰매장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br>1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 : 50퍼센트<br>2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50퍼센트<br>3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 50퍼센트<br>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동반 1인 포함) : 50퍼센트<br>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50퍼센트<br>6 단체할인(평일 단체로 사전 예약한 500명까지만 적용가능) : 50퍼센트<br>7. 3세 이하의 영유아 및 65세 이상인 사람 : 100퍼센트<br>8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 100퍼센트<br>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 노적봉<br>공원<br>호수<br>공원 | 야외<br>결혼식장             | 1회                | 200,000원                                   | - 기본물품 : 파라솔 및 테이블(40조), 의자(200개), 단상(2개), 강연대(1개), 사회대(1개), 몽클렌트(2개), 병풍(1조), 방송장비(앰프, 스피커1식, 마이크 3개)<br>- 공원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물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동일금액 적용  |

# 수정안 조문 대비표

## □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현 행                              |  |  | 개 정 안   |  |                      | 수 정 안  |                       |  |  |  |
|----------------------------------|--|--|---|--|----------------------|--|-----------------------|--|--|--|
| [별표2]                            |  |  | [별표2]   |  |                      | [별표2]  |                       |  |  |  |
| <b>공원 및 공원시설<br/>사용료(제11조관련)</b> |  |  | <b>공원 및 공원시설<br/>사용료(제11조관련)</b>  |  |                      | <b>공원 및 공원시설<br/>사용료(제11조관련)</b>   |                       |  |  |  |
| 3.기타사용료                          |  |  | 3.기타사용료   |  |                      | 3.기타사용료  |                       |  |  |  |
| 공원<br>명                          | 종<br>별   | 사용기준   | 금<br>액  | 비<br>고   | 공원<br>명              | 종<br>별   | 사용기준                  | 금<br>액   | 비<br>고   |  |
| 공<br>통                           | 사진촬영   | 1인 1년당   | 100,000   | 상시<br>영리행위에<br>한함  | 공<br>통               | 사진촬영   | 1인 1년당                | 100,000  | 상시<br>영리행위에<br>한함  |  |
|                                  | 영화촬영   | 주간 1회<br>야간 1회   | 50,000<br>100,000   | 영리목적<br>촬영   |                      | 영화촬영   | 주간 1회<br>야간 1회        | 50,000<br>100,000  | 영리목적<br>촬영   |  |
|                                  | 녹<br>화   | 1시간<br>초과시간당   | 10,000<br>5,000   | 에 한함.  |                      | 녹<br>화   | 1시간<br>초과시간당          | 10,000<br>5,000  | 에 한함.  |  |
|                                  | - 위탁관리자(법 제4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하는 자를 제외한다.)가 공원시설의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시행전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br>- 시장은 위탁관리자가 신고한 사용료가 부당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 위탁관리자(법 제4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하는 자를 제외한다.)가 공원시설의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시행전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br>- 시장은 위탁관리자가 신고한 사용료가 부당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  | 공<br>통               | - 위탁관리자(법 제4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하는 자를 제외한다.)가 공원시설의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시행전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br>- 시장은 위탁관리자가 신고한 사용료가 부당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사진촬영<br>1인 1년당        | 100,000  | 상시<br>영리행위에<br>한함  |  |
| 백<br>운<br>공<br>원                 | 유희시설<br>운동시설<br>기타시설   | 개인<br>단체<br>(평일에 한함)   | 어 른 7,000원, 청소년 · 군인 5,000원,<br>어린이 4,000원<br>어 른 3,500원, 청소년 · 군인 2,500원,<br>어린이 2,000원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br>에는 썰매장 사용료를 감면<br>할 수 있다.<br>1.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 : 50퍼센트<br>2.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50퍼센트<br>3.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 50퍼센트<br>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1~3급은<br>동반 1인 포함) : 50퍼센트<br>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50퍼센트<br>6. 단체할인(평일 단체로 사전 예약한 500명까지만 적용 가능) : 50퍼센트<br>7. 3세 이하의 영유아 및 65세 이상인 사람 : 100퍼센트<br>8.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 100퍼센트<br>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개인<br>단체<br>(평일에 한함) |  |                       | 개인<br>단체<br>(평일에 한함)   | 어 른 7,000원, 청소년 · 군인 5,000원,<br>어린이 4,000원<br>어 른 3,500원, 청소년 · 군인 2,500원,<br>어린이 2,000원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br>에는 썰매장 사용료를 감면<br>할 수 있다.<br>1.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 : 50퍼센트<br>2.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50퍼센트<br>3.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 50퍼센트<br>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br>(동반 1인 포함) : 50퍼센트<br>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50퍼센트<br>6. 단체할인(평일 단체로 사전 예약한 500명까지만 적용 가능) : 50퍼센트<br>7. 3세 이하의 영유아 및 65세 이상인 사람 : 100퍼센트<br>8.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 100퍼센트<br>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                                  | 썰매장  | 비고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br>에는 썰매장 사용료를 감면<br>할 수 있다.<br>1.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 50퍼센트<br>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br>(동반 1인 포함) : 50퍼센트<br>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50퍼센트<br>4. 단체할인(평일 단체로 사전 예약한 500명까지만 적용 가능) : 50퍼센트<br>5. 3세 이하의 영유아 및 65세 이상인 사람 : 100퍼센트<br>6.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 100퍼센트<br>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백운<br>공원<br>썰매장<br>비고  |                      |  | 백운<br>공원<br>썰매장<br>비고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br>에는 썰매장 사용료를 감면<br>할 수 있다.<br>1.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 : 50퍼센트<br>2.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50퍼센트<br>3.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 50퍼센트<br>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br>(동반 1인 포함) : 50퍼센트<br>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50퍼센트<br>6. 단체할인(평일 단체로 사전 예약한 500명까지만 적용 가능) : 50퍼센트<br>7. 3세 이하의 영유아 및 65세 이상인 사람 : 100퍼센트<br>8.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 100퍼센트<br>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  |
|                                  | 야외<br>결혼식<br>장   | 1회   | 200,000원  | - 기본물품 : 파라솔 및 테이블(40조), 의자(200개), 단상(2개), 강연대(1개), 사회대(1개), 몽글 텐트(2개), 병풍(1조), 방송장비(앰프, 스피커1식, 마이크 3개)<br>- 공원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물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동일금액 적용   | <삭제>                 |  |                       | 노적<br>봉·공<br>원<br>호수<br>공원<br>야외<br>결혼식<br>장   | 1회   | 200,000원   |